

가정복지국소관

1993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교사회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예산 총괄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 가정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안규모

2. 예산 개요

- 사항별 내역

3. 검토 의견

1. 예산총괄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경비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		%		%
계	328,586	100	288,723	100	39,863	13.8
기본적경비	55,364	16.9	54,185	18.8	1,179	2.2
인건비	30,512	9.4	29,294	9.3	1,218	4.2
관서운영비	13,925	4.2	13,978	4.9	△ 53	△ 0.3
기본경상비	10,927	3.3	10,913	3.8	14	0.1
사업비	192,168	58.5	160,720	55.6	31,448	19.6
경상사업비	12,909	4.0	13,432	4.6	△ 523	△ 3.9
주요사업비	179,259	54.5	147,288	51.0	31,971	21.7
기타경비	81,054	24.6	73,818	25.6	7,236	9.8

※ 충청북도 일반회계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887억 2천 3백만원에 비하여 13.8%인 398억 6천 3백만원이 증가된 3,285억 8천 6백만원의 규모임.

○ 가정복지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경 비 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		%		%
계	20,540	100	19,238	100	1,302	6.8
기본경상비	986	4.8	1,012	5.3	△ 26	△ 2.6
인 건 비	578	2.8	580	3.0	△ 2	△ 0.3
관서운영비	259	1.3	268	1.4	△ 9	△ 3.4
기본경상비	149	0.7	165	0.9	△ 16	△ 9.1
사 업 비	19,553	95.2	18,225	94.7	1,328	7.3
경상사업비	513	2.5	535	2.8	△ 22	△ 4.3
주요사업비	19,041	92.7	17,690	91.9	1,351	76.4
기 타 경 비	-	-	-	-	-	-

※ 가정복지국소관 일반회계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92억 3천 8백만원에 비해 6.8%인 13억 2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205억 4천만원의 규모임.

2. 예산 개요

첫째, 인건비는 2백만원이 감액되었는바,

- 노인복지 △ 5백만원
 - 여성회관 운영 3백만원
- 이 각각 증·감된데 기인하고 있음.

둘째, 관서운영비는 9백만원이 감액되었는바,

- 노인복지 △ 5백만원
 - 여성회관 운영 △ 4백만원
- 이 각각 감액된데 기인하고 있음.

셋째, 기본경상비는 1천 6백만원이 감액되었는바,

- 가정의례 △ 1백만원
 - 아동복지 △ 1백만원
 - 노인복지 △ 2백만원
 - 부녀복지 △ 2백만원
 - 청소년복지 △ 3백만원
 - 여성회관 운영 △ 6백만원
- 이 각각 감액된데 기인하고 있음.

넷째, 경상사업비는 2천 2백만원이 감액되었는바,

- 아동복지 사업 △ 4백만원
- 노인복지 사업 △ 8백만원
- 부녀복지 사업 △ 5백만원

- 청소년복지 사업 △ 6백만원
- 여성회관운영 사업 1백만원

이 각각 증·감된데 기인하고 있음.

다섯째, 주요사업비는 13억 5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는바,

- 아동복지 사업 2억 8천 5백만원
- 노인복지 사업 10억 5천 6백만원
- 부녀복지 사업 6백만원
- 청소년복지 사업 4백만원

이 각각 증가된데 기인하고 있음.

3. 검토 의견

가정복지국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道 전체 세출 예산 3,285억 8천 6백만원中 205억 4천만원의 규모로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局소관의 기정예산액 192억 3천 8백만원에 비하여 6.8%에 해당하는 13억 2백만원이 증액되었음.

이를 사항별로 세분해 보면,

첫째, 인건비는 2백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급여, 상여금, 인건비 등 당초예산에 책정된 처우개선비 7백만원 은 감액되었으나, 여성회관에 근무하는 5명의 일용인부임 인건비 5백만원을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준하여 추가 계상한 것으로 적절한 예산으로 사료됨.

둘째, 관서운영비는 9백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인건비 성격의 복리후생비(처우개선분)의 감액과 관서당경비를 비롯한 공공요금,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등 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10~30% 절감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음.

셋째, 기본경상비는 1천 6백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 급량비 1,300천원 · 국내여비 2,150천원
- 수용비및수수료 4,960천원 · 기타수당 2,940천원
- 재료비 기타 3,615천원
-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정액보조 1,070천원등은 지방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으며,

· 청소년大賞 심사위원회 수당 780千원은 신규 계상된 것으로 기본경상비는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요최소한의 경상적 경직성 경비로 편성한 것을, 예산절감 기준에 맞게 감액계상 하였으나,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 등은 절감액이 많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변경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넷째, 경상사업비는 2천 2백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 | | | | |
|-------------|----------|---------|---------|
| · 정보비 | 2,320千원 | · 특별관공비 | 3,320千원 |
| · 자산취득비 | 1,650千원 | · 물품구입비 | 436千원 |
| · 보상금 | 15,772千원 | · 기타 수당 | 690千원 |
| · 수용비 및 수수료 | 3,512千원 | · 임차료 | 367千원 |
- 대수선비 300千원 등은 절감계획에 의거 감액 계상되었으며
 · 모범여성 자원 봉사자 표창 보상금 1,500千원
 · 여성회관 도색 대수선비 4,500千원은 추가 계상한 것으로 절감폭이 큰 경비에 대하여는 확실적인 절감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다섯째, 주요사업비는 13억 5천 1백만원이 증액계상 되었는데,

- 아동복지 사업비는 2억 8천 5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육시설운영비 2억6천3백만원은 국고보조금이며, 총북유아원 난방시설비 등은 보사부의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 노인복지 사업비는 10억 5천 6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 특수시책사업인 노인승차권 지원 6억3천3백만원, 노인교통비지원 2천9백만원과 사회복지기금 지원사업인 경노식당 운영

1천 4백만원, 국고보조금으로 납골당 신축사업비 6천6백만원, 충주화장장 개·보수비 3억 1천만원 등은 의존수입으로 편성되었음.

- 부녀복지 사업비는 6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부녀지도사업 우수시군 시상과 저소득 모자가정 자활자립금 재원부담 조정분으로 추가 계상되었으며
- 청소년 사업비 4백만원은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상담실 운영 지원비로 계상된 것임.

주요사업비는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92 이월사업, 사회복지기금의 출연에 의한 예산으로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노인 승차권 지원사업에서 승차권 인쇄비 관계와 노인교통 지원비 계상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수입에 의한 주요사업비를 제외하면 신경제100일 계획에 따라 지방예산 절감기준에 의거 불요불급한 경비와 소모적 전시적 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나, 불우노인·아동·청소년 위문비는 예산절감 기준에 맞지 않아 형평에 문제가 있으며,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는 당초예산 편성시 필요했던 예산을 절감계상한데 대하여 사업추진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